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1594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2,618,350원 및 그 중 12,834,126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2,368,244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 6. 1. 접수 제1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2. 10. 8.경 원고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였고, 2019. 3. 22.경 E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할부금융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C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31. 자신의 부친인 피고 D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1. 피고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1. 6. 1. 접수 제137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23. 4. 4. 기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잔액은 17,357,586원(= 원금 12,834,126원 + 이자 등 합계 4,523,460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0%이며, 할부금융 채권 잔액은 25,260,764원(= 원금 22,368,244원 + 이자 등 합계 2,892,520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7.9%이다.

라.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및 할부금융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하면서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42,618,350원(= 17,357,586원 + 25,260,764원) 및 그

중 12,834,126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2,368,244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D가 자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